

◆며느리 권씨 일전 25-2

## 송려집 저자 배상협(襄相協, 흥해 배씨 21세)의 부인 권씨 (검교공파 27세, 택인계 命岳의 딸)

배상협은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 재능으로 어린 시절부터 예법과 학문에 뛰어나서 11세, 조부 기일 예법을 완벽히 수행해 “지례동자(知禮童子)”로 칭송 받고, 12세에 대유학자 배상열(高igon) 문하에서 「소학」을 배우며 ‘인(仁)’의 철학을 논했다.

그가 1차 과거 시험 향시에 합격후 본시험(예빈시)에 떨어지고 환향하여 오로지 학문에만 열중하여 사덕(四德), 이기(理氣), 과화(卦畫), 『홍법』오행설 등 심오한 주제를 탐구하여 ‘속찬요’ 등을 저술하니, 일찍이 스승 괴운 배상열이 “대성할 인물”로 평가했으나, 조선 유학계의 한계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스승 배상열의 요절(31세) 이후 상심하여 병이 들고 결국 자신 또한 44세로 요절하면서 그 많은 글은 ‘송려집’ 한권에 편린이 남아 전할 뿐이다.

그의 묘비명(碑銘)에는 “세월이 흐르며 경전의 참뜻이 사라져 가니, 공의 깊은 학문을 아는 이 누구인가? 호애산(묘지)에 묻혔으나 그의 빛나는 저술은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리라.”

그는 조선 후기 학문적 천재성이 시대적 환경과 스승의 조기 죽음으로 완성되지 못한 비운의 인물이다. 그의 삶은 명문가의 계보, 유학의 심오한 이론, 그리고 미완의 저작을 통해 역사에 기록되었다.

### 권씨부인에 대한 ‘송려집’ 기록

부인은 안동 권씨(權氏)로, 명악(命岳, 검교공파 26세, 택인계, 택인의 자)의 딸이며, 덕행이 아내의 도리(德)에 부합하고 시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함으로써 명성이 있었다. 두 아들 현린(顯麟)과 현봉(顯鳳), 그리고 세 딸(이학소·김시건·서우렬에게 각각 시집감)을 낳았다. 현린의 세 아들 잔주(瓊周)·구주(球周)·무주(武周)는 모두 핵심 혈통(同樞)으로, 이사공(義公, 배인길)의 후예이다.

(配)安東權氏命岳 德無以孝養舅姑聞生二男  
顯麟顯鳳三女李學韶金時健徐郁烈顯麟三子瓊周  
周武周同樞出系義公嗣)

검교공파 26세 권씨부인 권현린(顯麟)	
부인	현린(顯麟)
부인	현봉(顯鳳)
부인	이학소(李學韶)
부인	김시건(金時健)
부인	서우렬(徐郁烈)

배상협의 장인 권명악, 명학의 형수도 흥해 배씨, 모친도 흥해 배씨이다. 사위도 흥해 배씨이니 대단한 인연스런이다.

### 권씨 부인 자손들

2-3세대 후손 찬주(瓊周)는 아들 1명(선정)과 딸 3명(김락호, 순정모, 행영하)을 두었다. 구주(球周)는 아들 2명(선수, 선부)을 두었다. 무주(武周)는 아들 2명(선양, 선문)과 딸 1명(이응연)을 두었다.

관직 및 혼인 관계는 손방모의 아들 석기는 감역(監役, 종9품, 공사감독)을 지냈다. 김우한의 아들들

##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 제3장 뿌리에 대하여

#### 1. 다물(多勿)

‘다물’이란 고구려의 연호요 건국이념이었다. 그뜻은 ‘삼국사기’에 ‘여어위복고구토왈다물(麗語謂復古舊土日多勿)’이라 했으니, ‘옛 땅을 다 물리다’, ‘옛 땅을 다시 찾다’이다. 5세기경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고구려는 여러 제후국을 거느리고 동아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영토를 넓게 확보한 나라였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또한 이 시기에 ‘다물’을 국시(國是)로 삼고 단군조선의 영토를 다시 찾기 위해(多勿) 매진한 한민족의 얼이 살아있었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상이었다.

뿌리교육(역사와 국사)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이다. 이 땅의 5,000년 이 전의 역사적 유물은 그렇게 많지만, 역사기록은 삼국사기를 기점으로 2,000년에 머무르고 만 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매년 10월 3일은 개천절(開天節)이다. 우리 한민족이 개국한 날이다. 그날은 지금부터 4,343년 전의 역사이다.

우리나라 주변의 일본과 중국은 없는 역사도 날조해서 교육을 하는데, 왜? 우리는 많은 역사적인 사료와 유물들이 있음에도 지금의 국사교육은 왜 미온적이기만 한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신라의 한반도 통일(한민족 통일)은 순수한 자력이 아닌 당(唐)나라의 외세의 힘을 빌린 통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 대가(代價)로 대륙의 우리의 땅을 내어 주어서, 반도 안에만 머물러 저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온 부끄러운 역사 때문이리라. 수십 세기를 사대주의(事大主義)와 모화사상(慕華思想)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단 한 번 고려 말에 중국의 원·명의 교체시기의 혼란기를 노려 최영장군이 대륙정벌을 실행코자 하였으나, 이성계의 위학도 회군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또한



노동마을 뒤 호골산의 배상협과 부인 권씨묘. 비석도 상석도 없다. 조속한 건립이 요구된다. 배상협은 비록 서생이나 그의 위기지학의 선비정신은 흠토의 대상으로 손색이 없고 그 부인 권씨의 행실도 모범적이다.

사진 배진섭

작됨은 우연이 아니다.

#### 선비의 고장 영주

그리고 영주가 ‘선비골’이 된 이유도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여말의 충신 사복재(思復齋) 권정(權定, 검교공파 15세)을 일컫는 말이다. 권정은 공양왕 때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안동 예안 땅에서 은둔했다. 나리를 읊은 슬픔을 달래는 마음에 반구정과 봉송대를 짓고 스스로 아호를 사복재(思復齋 : 고려를 사모하는 올 곧은 마음)라 했으나 비분강개가 오죽했겠는가?

태조 이성계가 승지로 불렸고, 태종이 대사간과 대사헌으로 연이어 불렸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다고 해 마을 사람들은 마을 이름을 기사리(基里)라 짓기도 했다고 한다.

예언의 권정이 영주 선비로 칭송받는 이유는 권정의 아들이 영주로 옮겨왔고, 후손들이 봉송대와 반구정을 지금의 자리에 다시 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정은 안동과 영주 선비 모두로부터 중절의 표상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휴계(休溪) 전희월(全希哲)은 조선 단종에 대한 절의를 지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무과에 급제해 벼슬이 상장군에 이르렀으나 어린 단종이 즉위 3년 만에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자 벼슬을 던지고 서른의 나이에 충북 옥천으로 낙향했다. 이후 세조 3년에 가솔을 거느리고 소백산 너머 영주 땅에 숨어들었다.

영주의 사학자들은 휴계 선생이 성삼문 등 사육신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죽고, 단종마저 강원도 영월로 귀양가자 영월과 가까운 영주 당시 지명은 荣川(榮川) 순흥땅으로 왔다고 전하고 있다. 휴계 선생은 영주에 숨어 살면서 돌을 쌓아 대를 만든 뒤 밤마다 판대를 갖추어 단종이 계신 영월을 향해 절을 올렸고, 단종이 죽자 영월을 향해 통곡을 하며 삼년복을 입었다고 한다. 이로써 영주는 산비의 고장이 된 것이다.

#### 권씨 부인 (검교공파 27세) 내력

부인의 가계는 검교공파로 파의 특성(3세에서 분파)상 시조로부터 출발하여 본다, 대체로 지방 선비로 평범하게 영주 근방에 살아온 조상이나 14세 권정이 이성계 개국에 반대 안동 도목촌에 은둔하면서 본격적으로 안동, 봉화, 영주로 세거 지역이 된다.

여기서 동시대에 백죽당 배상지(栢竹堂, 裴尚志, 1351~1413)도 고려말 관사복사사(정3품)에서 안동 금계리 도목촌으로 은둔하고 그의 부인도 권희정(權希正, 좌윤공파 16세, 문정공)의 딸이다. 조상은 고려 검교대장군 배경분(裴景分)의 7세손이다. 배상지의 부친 배전은 안동 일직의 손흥량의 사위, 배상지도 부인이 권씨이니 원래 왕도 개경인근 파주 출신이나 안동에서 절개를 지켜 선비로서 삶은 마감한다. 여기서 두 가문의 안동 정착의 스토리가 시

두 장군의 생각의 차이로 빚어진 고려의 비극으로 끝났다. 1392년 7월 16일 개성의 수창궁(壽昌宮)에서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하였고 500년의 이씨조선이 이 땅이 주인이 되어 27명의 왕들(명군과 성군, 폭군)이 다스렸지만 이조말, 1910년에 결국 국운이 쇠퇴하고 이 민족은 수백 년 동안 이 나라에 노략질과 도적질을 일삼아 오던 왜구의 후손인 일본에게 이 강토를 송두리째 내어주질 않았던가!

암울하기 말할 수 없는 일제의 강점기 36년 동안 이나라는 주권도, 강토도 없이 마침내는 내 나라를 까지 쓰지 못하고, 1939년 11월 조선민사령부(朝鮮民政部)를 발표하여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성씨를 일본식 성으로 바꾸는 이른바 일제의 황민화(皇民化)로 이듬해 8월까지 322만호로 대한인의 80%가 성씨를 바뀌지 않았는가?

세상(물질)의 현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다. 나라도 없고, 내 말도 없고, 성씨도 없는 이 민족은 뿌리와 땅을 잃어버린 채로 36년을 살아오다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천지이수(天地理數)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았으나 오랜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일제의 교육, 행정제도 등을 답습한 채로 대한민국 제 1 공화국을 수립하였으나, 국운이 불행하여 우리가 원치도 않았던 한 민족간

##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영수증(현금영수증)과 계약서 등에 대한 세무상식 ③



권오현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  
주밀공파 35세·삼덕회계법인대표

### III. 세법상 거래 증빙 수취 의무 및 불이익 안내

위에서 설명한 각종 세법등에서 정한 관련 증빙이나 계약서등은 거래발생시 마다 당시자들은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1. 기본 원칙

모든 사업자는 거래 시 다음 중 하나의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적격증빙 종류

종류	관련 세법	주요 발행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
계산서	소득세법/법인세법	면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가맹점
현금영수증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 사업자
간이영수증	미적격증빙 제외대상	세무상 비용처리 불가

#### 2. 수입금액별 증빙 수취 의무

수입금액 기준	장부작성 및 증빙 수취 의무
부식부기의무자 (3억 이상 / 특정업종 1.5억 이상)	적격증빙 의무 수취, 미수취 시 가산세 대상
간편장부대상자 (3억 미만)	가급적 적격증빙 수취, 필요경비 인정은 가능하나 주의
단순경비율 대상자	간이장부 작성, 증빙 수취 의무 없음 (추계 과세)

#### 3. 증빙 미수취 시 불이익 및 가산세

①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법인세법 §116, 소득세법 §160)

● 지출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사업 관련 비용이지만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인정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39)

●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 공제 불인정

③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허위 발급 가산세

항목	가산세율
지연 발급 또는 미발급	공급가액의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의 2%
세금계산서 전자발급 미이행	건당 1만원

#### 4. 관련 세법 조문 요약

<table border="1